

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 
제2차 정례회 도시·교통위원회  
【2019. 11. 22.(금) 10:00】

2020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 
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 
도 시 · 교 통 위 원 회

#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

(안전교통국)

## 검 토 보 고

2019년 11월 22일

전문위원 이 광 희

1. 제출근거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제2항
2.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 조성 규모

### ○ 총 괄

(기준: 연도말 예치금, 단위: 천원)

기 금 명	2019년도말 조성액	2020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0년도말 조성액	증 감
		수입	지출		
공용의청사건립 기금 등 13개	84,020,293	26,670,104	26,280,090	84,410,307	390,014

- 강서구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총 13개로 2020년도에 조성할 기금 규모는 총 844억 1,030만 7천원이며, 전년도 기금 조성액 840억 2,029만 3천원 대비 3억 9,001만 4천원(0.46%)이 증가함.

### 3. 도시·교통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 규모

(기준: 연도말 예치금, 단위: 천원)

기 금 명	2019년도말 조성액	2020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0년도말 조성액	증 감 액	증감율 (%)	비고
		수입	지출				
합 계	8,479,449	3,161,497	2,680,920	8,960,026	480,577	5.66	
옥외광고정비기금	3,376,147	679,440	1,251,520	2,804,067	△572,080	△16.94	도시 관리국
재난관리금	4,042,529	1,181,057	124,400	5,099,186	1,056,657	26.13	안전 교통국
도로굴착복구기금	1,060,773	1,301,000	1,305,000	1,056,773	△4,000	△0.37	안전 교통국

○ 도시·교통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총 3개로 2020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총 89억 6,002만 6천원이며, 전년도 대비 4억 8,057만 7천원(5.66%)이 증가함.

### 4.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 조성 규모

(기준: 연도말 예치금, 단위: 천원)

기 금 명	2020년 계획	2019년 운용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6,155,959	5,103,302	1,052,657	20.62
재난관리기금	5,099,186	4,042,529	1,056,657	26.13
도로굴착복구기금	1,056,773	1,060,773	△4,000	△0.37

○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 복구기금으로 2020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총 61억 5,595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5,265만 7천원(20.62%)이 증가함.

## 5. 기금운용(수입·지출)계획

(단위: 천원)

기금명	수입		지출	
	항목	금액	항목	금액
	총계	7,585,359	총계	7,585,359
재난관리 기금 (123쪽)	합계	5,223,586	합계	5,223,586
	· 전입금	1,074,057	· 비용자성사업비	74,400
	· 예치금회수	4,042,529	· 용자성사업비	50,000
	· 이자수입	107,000	· 예치금	5,099,186
도로굴착 복구기금 (133쪽)	계	2,361,773	계	2,361,773
	· 예치금회수	1,060,773	· 비용자성사업비	1,305,000
	· 이자수입	26,000	· 예치금	1,056,773
	· 기타수입	1,275,000		

### ○ 재난관리기금

- 재난예방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에 근거하여 설치·운영하고 있음.

- 수입과 지출은 52억 2,358만 6천 원으로
- 수입은 전입금 10억 7,405만 7천 원, 예치금 회수 40억 4,252만 9천 원, 이자수입 1억 700만 원을 계상함.
- 지출은 비용자성사업비 7,440만원, 용자성사업비 5,000만원, 예치금 50억 9,918만 6천 원을 운용할 계획임.

## ○ 도로굴착복구기금

- 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과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, 도로의 효율적 사후 관리 등을 위하여 1997년부터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에 근거하여 설치·운영되고 있음.
  - 수입과 지출은 23억 6,177만 3천원으로
  - 수입은 예치금회수 10억 6,077만 3천원, 이자수입 2,600만원, 기타 수입으로 12억 7,500만원을 계상함.
  - 지출은 비용자성사업비 13억 500만원, 예치금 10억 5,677만 3천원을 운용할 계획임.

## 6. 검토 의견

- 안전교통국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0.62%가 증가하였고, 재난관리기금의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인 예치금회수, 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, 지출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므로,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목적사업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경상적 세외수입, 임시적세외수입,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(예치금회수·예치금)가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므로 구민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제대로 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운용되는 만큼, 기금 고유의 설치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 할 것으로 사료됨.

## 관계 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

**제3조(기금의 설치 제한)**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.

**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 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·유동성·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** ① 기금은 세계현금(歲計現金)의 수입·지출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

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(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)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7조(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)**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.

-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. 다만,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,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.
-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·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.

**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8조의2(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-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8조의3(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성인지 기금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-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9조(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)**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.

-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,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.
-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,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

장(章)·관(款)·항(項)으로 구분하고,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·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·부문·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, 세부항목은 단위사업·세부사업·목으로 구분한다.

**제9조의2(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)**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**제10조(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)**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1.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
2.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
3.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

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**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지출사업의 이월)**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**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  -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14조(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·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,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·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·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
  2.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  3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
  4.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5조의2(포괄기금의 설치·운용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(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)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·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(이하 "포괄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통합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**제17조(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·운영)** ①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(相生) 발전을 지원하고,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(이하 "발전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·도는 발전기금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을 설립하여야 한다.

③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발전기금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7조의2(발전기금의 재원)**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
  2.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
  3.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  4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  5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
  6. 발전기금의 운용수익
  7. 그 밖의 수입금
- ② 「지방세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시장, 인천광역시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고,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시장, 인천광역시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할 수 있다.

**제18조(발전기금의 용도)**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8조에 따른 공사채(公社債)의 인수
3.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
4.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
5.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

**제19조(발전기금에의 예치)**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.

1. 제16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
3.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

**제20조(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)** ①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채정법」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② 조합은 발전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은 한도액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.

## 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금의 조성)**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
2. 기금의 운용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 등

**제3조(기금의 용도)**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74조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(개정 2011.12.30, 2017.6.7.)

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의 다음 각 목(개정 2011.12.30)
  - 가.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
  - 나. 기본법 시행령 제32조(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)제2항에 따른 시설(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.)의 안전진단 및 보수·보강사업(개정 2013.3.13)
  - 다.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
  - 라.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
  - 마. 안전문화 활동 육성·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
  - 바.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(단, 유지관리 제외)
  - 사. 하천시설, 빗물펌프장, 배수관, 우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·정비·보수사업
  - 아.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개량·보수사업
  - 자. 재난취약시설, 재난현장,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, 수당 및 경비
  - 차.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
2. 재난 예보·경보시설의 다음 각 목(개정 2011.12.30)
  - 가. 자동우량경보시설, 자동음성통보시스템, 재해문자전광판,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
  - 나.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
3. 재난피해시설(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의 다음 각 목
  - 가. 수해·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
  - 나.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
  - 다.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(단, 제설차량 구입,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,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) 및 임차
  - 라. 기본법 제31조(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)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
4.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의 다음 각 목(개정 2011.12.30)
  - 가.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
  - 나.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
  - 다.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
5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의 다음 각 목
  - 가. 풍수해저감계획, 비상대처계획(EAP) 수립,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

나. 재해원인분석, 침수흔적조사,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 
다.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, 항공사진 측량

6.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
7.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
8.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**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금 전용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고(이하“구금고”라 한다)에 예치·관리한다.

② 구청장은 영 제7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을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고,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 할 수 있다.

**제5조(기금의 용자 등)**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등을 용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용자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그 밖에 용자금의 한도액·이자율·상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6조(기금관리공무원)**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안전교통국장
2. 기금출납원 : 안전관리과 안전기획담당주사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**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, 제 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, 특정 성(남성 또는 여성)이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재난 및 기금 운용에 관련 있는 강서구 소관 부서의 장
2.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
3.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안전기획담당주사가 된다.

⑦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**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

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**제8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의 운용계획
2.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
3. 기금의 결산
4. 기금의 용자대상자 선정
5.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

**제9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(삭제 2007.5.9)**

**제11조(준용)**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」에 의한다.

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」에 의한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금의 재원)**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도로법」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
2. 기금의 이자수익금

**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**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3조(기금의 관리·운용)** ①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관리·운용한다.

②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
③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**제4조(기금의 용도)**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.

1. 도로굴착복구공사
2.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(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)
3.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·연구·감독업무
4.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

**제5조(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)**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,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 운용관 및 출납원을 둔다.

②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, 기금출납원은 도로굴착복구담당주사로 한다.

**제6조(기금운용심의회)** ①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
2.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
3.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
4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, 구의원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,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 민간전문가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④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.

⑤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

3.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⑥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**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·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2.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②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,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

**제6조의3(수당)** 심의회 심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7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**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「지방재정법」 제54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결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,지출,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